

□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I. 목적

이 실천사항은 대원강업의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II. 용어의 정의

1. “협력업체”라 함은 대원강업의 제조, 건설, 용역위탁 거래 등의 대상업체로 예정되거나 거래중인 사업자로서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수급사업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수탁사업자도 포함한다.
2. “협력업체 풀(Pool)”이라 함은 대원강업이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등록하여 관리·운용하는 협력업체 그룹을 의미한다.
3. “협력업체 선정”이라 함은 대원강업의 협력업체 풀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4. “협력업체 운용”이라 함은 대원강업이 협력업체로 선정, 등록된 업체에 대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등록취소 등 협력업체 풀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III. 협력업체 선정, 운용 실천사항

1. 기본원칙

이 실천사항은 대원강업의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에 대한 자율성, 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일반적 사항만을 제시한 것이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원강업이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2. 협력업체 선정, 운용 실천사항

가. 협력업체 선정기준, 절차 및 결과의 공개

(1) 대원강업 홈페이지(<http://dwku.com>)에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있으며 대원강업은 협력업체 심사를 수시로 하고 있다.

< 협력업체 등록 및 선정 기준 >

구 분	항 목
신용평가	대외신용평가기관 평가 “보통” 이상
공정감사	품질보증체제심사표 심사결과 B등급(70점) 이상
품질관리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및 시험장비 보유 여부
대외인증	ISO 9001 최신버전 인증보유 여부
생산능력	CAPA' 충족 가능한 설비, 인원, 시설 등 보유여부
기타사항	관련 규정에 명시된 기준의 충족 여부

< 협력업체 선정 절차 >

1) 부품 공급업체 선정 절차

- ① 신규 개발에 따른 선정의 경우 연구소에서 영업의 개발검토의뢰에 근거하여 사양검토를 한 후 통합구매팀에 업체선정을 의뢰한다.
- ② 통합구매팀은 기술연구소와 기술 조건 및 부품 사양 등에 관하여 협의 하고 사양설명회(기술미팅)을 실시하며 업체선정 평가표에 근거하여 최고 평가점수를 취득한 업체를 공급업체로 선정한다.
- ③ 사양설명회(기술미팅)는 기술연구소, 품질경영실, 통합구매팀, 영업

부서 등 참석하며, 참석업체는 R&D 능력, 설계검토, 품질, 시험, 생산, 가격부문으로 나누어 검토한 내용을 발표하고, 통합구매팀은 각 부문별 평가점수에 회사의 정책과 업무협조도 등을 고려하여 업체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 ④ 사양설명회 결과에 근거하여 업체선정 품의서를 작성하고 관련부서 경유 후 사장의 승인을 득한다.
- ⑤ 고객지정, 복수견적불가상황, 개발일정이 촉박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사양설명회를 실시하지 않고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2) 부품 외 공급업체 선정 절차

- ① 외주가공, 소모저장품, 설비예비품의 공급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 통합구매팀에서 업체 선정을 실시한다. 파렛트의 경우 공장 생산지원 부서의 업체선정 요청을 통합구매팀에 접수하여 업체선정을 실시한다.
- ② 통합구매팀에서는 복수의 업체를 대상으로 견적서를 접수받아 공급업체를 선정하며, 필요시 업체를 방문하여 원가실사를 실시한다.
- ③ 업체선정은 최저 견적가를 제시한 업체를 원칙으로 품질 및 납기수준, 업무협조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공급업체 선정과 동일하게 품의서를 작성하여 사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 신규업체 등록 절차 >

- ① 부품, 외주, 소모저장품 등의 업체등록이 필요한 경우 통합구매팀에서 공급자관리 절차서에 근거하여 최초업체평가를 실시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평가점수를 득한 경우 신규업체 등록을 실시한다.
- ② 신규업체는 서면평가자료를 작성하여 유관부서에 송부하고, 서면평가 실시 후 기술연구소, 품질경영실, 통합구매팀 합동으로 협력업체 품질보증체계 심사표를 활용하여 방문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 ③ 최초업체평가 결과를 종합한 신규업체 등록 품의서를 작성하여 사장의 승인을 득한 후 업체등록을 실시한다.

(2)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갱신등록 대상업체에 대하여 45일 전에 그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포함, 이하 같음)으로 개별 통지한다.

- (3) 협력업체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메일 또는 협력사 VAN을 통해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메일 또는 협력사 VAN을 통해 통지한다.

나. 선정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

대원강업은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한다.

다. 선정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 (1) 협력업체 선정기준은 위탁할 거래내용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세부 선정기준별 반영 비중의 배분이 적절하여야 한다.

<정당한 선정기준 및 적용>

- ① 관련 법규에 의한 해당 전문면허 보유여부
- ②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대상 업체의 재무건전성 여부
- ③ 일정기간 동안의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 위반사실 여부
- ④ 해당 거래와 관련된 기술개발실적 및 설비보유 여부

<부당한 선정기준 및 적용>

- ① 퇴직임직원, 학연, 지연, 친인척 등과 관련 있는 업체인지 여부 등을 선정기준으로 하는 경우
 - ② 과거 거래실적 기준에 대한 과도한 배점 등으로 신규 업체의 진입을 방해하는 경우
 - ③ 경쟁업체와의 거래 또는 중복 협력업체등록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 (2) 대원강업의 귀책사유로 협력업체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미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한다.
- (3) 정당한 이유없이 기존 등록업체와 신규 등록업체 간의 선정기준에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

라. 공평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협력업체로 선정·등록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개시를 위한 입찰 참가기회 등이 제한되거나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

마.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개성

대원강업은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를 대원강업 홈페이지에 공개함과 동시에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도 공개한다.

바.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

대원강업은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한다.

사.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 (1)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은 객관적이고 적절한 사유에 근거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정당한 등록취소 기준>

- ① 당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부도, 휴업, 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 ③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 ④ 관련 법규에 의한 면허가 취소된 경우
- ⑤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연속 3회 이상 불합격 판정을 받았을 때
- ⑥ 실제 생산과정에서 전체 납품량의 10%이상의 부적합품이 년 2회 이상 발생하였을 때

- ⑦ 납품기일을 연속 3회 이상 지연시켰을 때
- ⑧ 공급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당사에 피해를 준 경우

<부당한 등록취소기준>

- ① 원가절감계획, 납품단가인하요청 등 대원강업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한 비 협조를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 ② 경쟁사업자의 협력업체로 중복등록 된 것을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 ③ 수급사업자가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원강업이 미 발주 또는 미 위탁함으로써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다만,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거래개시 경쟁에서 탈락함으로써 상당기간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취소 가능)
 - ④ 수급사업자의 임직원 인사에 대한 대원강업의 지시에 불응함을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 (2) 협력업체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대원강업의 귀책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재등록 조치를 취한다.
- 아. 대원강업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실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예시. 인사상 불이익 등)를 취한다.